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병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982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9.

발 의 자:민병덕·김용민·이광희

정진욱 · 김남희 · 김재원

유준병 • 박선원 • 오세희

서영교 · 이강일 · 박성준

김현정 · 김남근 · 서미화

조 국·백혜런·박홍근

권칠승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이 채권자인 경우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로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감경·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·면제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회생결정 또는 파산선고 이외에는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 채무를 별도로 감면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연대보증채무자 의 재기(再起)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「기술보증기금법」,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과 같이 신용보증 기금도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방법서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·면제할 수 있도록 하 여 대표이사 등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, 감경·면제를 받은 연대보증 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 록 하여 법적 분쟁을 차단하고자 함(안 제30조의3). 법률 제 호
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기금은 중소기업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 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「민법」 제485조에도 불구하고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0조의3(연대보증채무의 감경	제30조의3(연대보증채무의 감경
•면제) (생 략)	· 면제) <u>①</u> (현행 제목 외의 부
	분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기금은 중소기업 연대보증
	채무자의 재기 지원 등을 위하
	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4조에
	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
	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
	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③ 제2항에 따라 연대보증채무
	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
	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
	증채무자는 「민법」 제485조
	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면책을
	주장할 수 없다.